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법학박사)

정진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나서 안전보건상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제조·유통의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두는 쪽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산안법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한 후에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조·유통단계에서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가. 양도 등의 제한 등

근로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크거나 사용단계에서 위해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단계 이전에 구조상의 안전 및 방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대통령령이 정한 기계·기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본 조항에서 양도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진열까지 규제한 것은, 안전상 불비(不備)한 기계·기구

의 양도,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기계·기구전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제품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동일 형식의 양산품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본 조항에서 말하는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해야 하는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별표7에,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유형에 따른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위의 방호장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나. 국소방호 조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 작동부분상의 키, 볼트 등의 돌기물에 일정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의복 등이 그러한 위험부분에 말려들어가 불의의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폴리, 회전축, 체인 등의 동력전달부분, 속도조절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종래는 이러한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방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계·기구가 사용자에게 공급되기 전 단계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안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험부분에 대해 덮개를 부착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력기계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동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아래와 같은 ‘국소적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 ①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문함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②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③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이상의 방호장치에 필요한 사항 역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방호조치의 성능 유지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산안법 시행

규칙 제47조), 근로자가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라. 특징

범죄로서의 산안법 위반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산안법의 규정은 일정한 작위를 의무 지우는 명령규정과 일정한 부작위를 의무 지우는 금지규정으로 구분된다. 명령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부작위범이 되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산안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부작위범인 것과 달리, 산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작위범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동 조항은, 산안법의 많은 규정들이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무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모든 자가 의무주체에 해당 된다. 즉, 동 조항은 사업주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동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②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가. 기계·기구·설비의 대여 시 조치

가동 일 수가 적은 대형기계 등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등의 사정 때문에 건설기계를 비롯한 여러 기계·기구·설비의 대여업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 리스업자가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는 양태로는 크게 나누어 기계·기구·설비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오퍼레이터(운전자)를 함께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기계·기구·설비를 빌린 경우, 당해 기계·기구·설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책임은 당연히 그 기계·기구·설비를 빌려 작업을 하는 측에 있지만, 소유권은 리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여를 받은 자는 충분한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당해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보수, 개조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강구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산안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대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⁴⁾

(1) 대상 기계·기구·설비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기계·기구·설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② 이동식 크레인 ③ 타워크레인 ④ 불도저 ⑤ 모터 그레이더 ⑥ 로더 ⑦ 스크레이퍼 ⑧ 스크레이퍼 도저 ⑨ 파워 셔블 ⑩ 드래그라인 ⑪ 클램셀 ⑫ 버킷굴삭기 ⑬ 트레치 ⑭ 항타기 ⑮ 항발기 ⑯ 어스드릴 ⑰ 천공기 ⑱ 어스오거 ⑲ 페이퍼드레인머신 ⑳ 리프트 ㉑ 지게차 ㉒ 롤러기 ㉓ 콘크리트 펌프 ㉔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2) 대여 시 조치내용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I. 해당 기계·기구·설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II. 해당 기계·기구·설비를 받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장치의 내역
 -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수리,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만,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 받는 경우에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그리고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기계 등 대여사항 기록부(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2조).

기계·기구·설비를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0조제 1항).

- I. 해당 기계·기구·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II. 해당 기계·기구·설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작업의 내용
- 지휘계통
- 연락, 신호 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계·기구·설비를 대여 받는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 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3) 기계·기구·설비 조작자의 의무

기계·기구·설비를 조작하는 사람은 기계·기구·설비를 대여 받은 자로부터 이의 조작을 위해 주지 받은 사항, 즉 i)작업의 내용, ii)지휘계통, iii)연락·신호 등의 방법, iv)운행경로·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v)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목)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51조).

나. 건축물의 대여 시 조치

최근 하나의 건설물을 사업주에게 대여하는 오피스텔, 공장형 아파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물의 방 하나를 빌린 자에게 산업재해의 방지를 의무 지우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건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컨대, 소유자)에게 일정한 조치의 이행 의무 지우고, 당해 건축물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안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건설물의 대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1) 피난용 출입구 등 설치 및 관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에 미끄럼 방지대·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 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2) 경보용 설비·기구 비치 및 유지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내부 종사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4조).

(3) 국소배기장치 등의 점검·보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배기처리장치 중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배기처리장치 중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5조).

(4) 편의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6조).

(5)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경보 설정 및 주지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제57조).

다. 특징

산안법 제33조 제3항 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은 현재까지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에서도 확인된 것이 거의 없고, 실제로 동 조항 위반죄로 의율 되어 송치되는 사례도 많지 않다.⁶⁾ 고용노동부의 정책부서 및 실무에서 동 조항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물이해가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크레인 등 건설현장에서 임대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사업주가 산안법 제23조의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건설기계 자체에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방호조치를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기계에 대해 점검 또는 서면발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의2 제1항 위반), 해당 사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

주석

1. 개정(2013.6.12.) 전의 산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동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란 '사용에의 제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판 2006.1.12. 2004도8875).
2.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4.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6. 하나의 사례로서는 2008년 9월 대구 달성군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롤리기를 운전한 사안에서 롤리기를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죄[제33조 제2항(현재의 제33조 제3항) 위반]로, 롤리기를 대여 받은 현장소장은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죄[제33조 제2항(현재의 제33조 제3항) 위반]로 각각 처벌된 사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5.22., 2009고약70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9형제4092호 사건).